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서정화*

<요 약>

정보통신기술(ICT)의 개발과 투자가 선진국 사이의 경제 발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P)의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과세 방안도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었다. 그래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져 어떤 분야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유형자산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자산가치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입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증대되고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한 검토는 초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의 감소 대비 및 사회복지 등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법에서 지식재산권의 통일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의 과세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사업자인지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의 과세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홀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의 과세는 이익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계산의 기초가 된다. 이에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모두 익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손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연구비, 개발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은 이를 구별하여 이익조정을 해야 한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연구하기 위한 R&D 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지식재산권,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조세지원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경영학 박사, suzukiyu81@yonsei.ac.kr.

I. 서 론

“무인도에 표류 시 미키마우스를 그려 조난구조를 요청하면 월트디즈니사(The Walt Disney Company)에서 저작권 침해로 찾아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막강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그렇다면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있을까? 만일 과세체계가 있다면 법률과 판례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개발과 투자가 선진국 사이의 경제 발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의 관리가 중요해졌다.²⁾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발맞추어 과세방식도 도입되었다. 가령, 지식재산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제도,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관련 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지식재산 자체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 감면제도 등을 논의 중이다.³⁾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었다.⁴⁾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은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져 어떤 분야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유형자산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가령, 코카콜라의 경우 무형자산인 회사의 브랜드가치가 무려 74조 9,586억원이나 된다.⁵⁾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자산가치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 입도 많아지고 있다.⁶⁾ 이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엄정하

1) Jonathan Schwartz, Note, Will Mickey Be Property of Disney Forever? Divergent Attitudes Toward Patent and Copyright Extensions in Light of Eldred v. Ashcroft, 2004 U. ILL. J.L.TECH.& POL'Y 105, 2004, at 107.

2)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EF, 2016, at 2.

3) 하홍준, “지식재산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 Patent Box 제도를 중심으로”, 『KIIP동향』 제3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93면.

4) 회계기준상에서의 기업의 자산은 유형고정(토지, 건물 등) 자산은 물론 무형고정(영업권, 특허권 등) 자산 외에도 채고자산(상품, 제품 등), 이연자산(창업비, 개업비 등), 금융자산 등이 있다.

5) interbrand, <<https://bit.ly/2O0XCuG>>, (Last visited June 20, 2019).

6)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은 구글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5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세금은 200억 원을 납부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의 범위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열거하였지만, 유형·금융자산이 아닌 자산, 기업 사회활동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갖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 거래는 사후 평가를 바탕으로 당초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데일

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한 검토는 초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의 감소 대비 및 사회복지 등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의 과세를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과세관청의 입장으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지식재산권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에 관한 쟁점을 논한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인세 관련 과세방안의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한다. 지식재산권의 평가문제, 감가상각 규정의 보완, 조세지원의 확대, 영업권 양도시에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의 구분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과세대상으로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세법과 회계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제Ⅲ장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 제Ⅳ장에서 지식재산권의 과세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Ⅴ장 결론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Ⅱ. 과세대상으로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론

1. 지식재산권 개념의 통일 필요성

우리나라 조세법에서는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일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몇몇 개별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가령,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이러한 규정을 반대해석하자면 채권과 소유권이 아니라면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은 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을 열거한 규정이다. 따라서 동 규정을 과세대상 범주에 대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리, “구글 韓시장서 5조 벌고 세금은 200억 … “내년 구글세 도입””, 2019년 7월 11일자.

7) 「국세징수법」 제29조(압류조서) ①세무공무원은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채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⁸⁾에서는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의 압류 방법 및 절차 등과 함께 등기 및 등록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세법의 관점에서의 지식재산권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서 평가와 관련한 규정에서도 무체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⁹⁾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상속·증여의 대상인 무체재산권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대상으로, 영업권(제2항), 어업권(제4항),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제5항), 광업권(제6항) 및 채석권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제1항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고객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에서 설명한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개별세법 규정들은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권의 정의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이 과연 개념 그대로 지식재산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준물권으로 취급되는 어업권, 광업권을 포섭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정이다.

연구자는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지식재산기본법」¹⁰⁾ 제3조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동 개념을 조세법에서 차용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런 류에서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8) 「국세징수법」 제51조(지식재산권등의 압류)

- ② 세무서장은 지식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지식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지식재산권의 가액) 지식재산권(無體財產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10)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9일자로 제정한 법률로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2. 회계상 지식재산권의 개념

회계에서는 지식재산을 무형자산으로 판단한다. 소위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¹¹⁾ 여기서의 비화폐성 자산은 실물자산으로서 일정 화폐액으로 표시될수 없는 자산을 의미한다.¹²⁾ 이 같은 무형자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¹³⁾

이러한 무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무형자산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¹⁴⁾ 참고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감가상각(depreciation)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각종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권, 계속기업가치, 인적자산, 사업장부와 기록 및 운영시스템 등, 특허권·저작권·디자인·노하우 등, 고객기반 무형자산, 라이선스·인허가 등, 비경쟁계약, 프랜차이즈, 상표 등(제197조), 연구실험비(제174조), 컴퓨터소프트웨어(제167조, 제174조), 창업비(제248조)등이 있다.¹⁵⁾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K-IFRS)은 무형자산의 공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브랜드명, 제호와 출판표제, 컴퓨터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¹⁶⁾

이러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분류는 크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권리(rights), 인적관계(relationships), 집합적 지식물(grouped intangibles)로 분류할 수 있다.¹⁷⁾

첫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지식재산은 무형자산의 특정한 분류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타인인 권한 없는자의 사용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다. 가령, 상표, 저작권, 특허권, 상호, 영업비밀, 노하우 등이라고 할 수 있

11) 심태섭,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10면.

12) 이영우, 「감가상각실무」, 영화조세통람, 2014, 10면.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1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 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5) 기획재정부, 「K-IFRS 도입에 따른 세법상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개선안 연구」, 2010, 29면.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17) Gordon V. Smith and Russell L. Parr,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Third Edition, Hoboken, NJ : John Wiley & Sons Inc., 2000, at 89.

다.¹⁸⁾

둘째, 권리(rights)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방법이다. 모든 기업들은 B2C(business to consumer), B2B(business to business) 등과 같은 계약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특정한 권리를 정부의 인가나 허가 또는 정부기관에의 등록을 통해서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서 표준 계약의 내용 및 특약사항,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⁹⁾

셋째, 인적 관계(relationships)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소비자와 협력업체 등과 확립된 사업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동반자 관계는 계약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²⁰⁾

넷째, 집합적 무형물(grouped intangibles)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현금을 제외한 부동산 등은 감정인에 의하여 가치가 매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의 가치 판단은 감정인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²¹⁾

3. 과세대상으로서의 지식재산권의 판단

현행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이에 조세법이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지식재산기본법」과 「저작권법」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지식물에는 재산권이 포함되며, 이 재산권의 범주에는 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준물권으로 취급되는 어업권과 광업권 등을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²²⁾

특히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지식재산권과 무형자산의 개념이 구별되지만 두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식재산권의 다양성과 법적 성질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가령, 소유권은 권리와 객체가 명백히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특허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²³⁾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 것이어서, 권리와 자산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무형자산까지도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의 일부이지만 과세와 관련하여 무형자산과 지식재산권은

18) Raymond D. Rath, Robert James Cimasi, *Valuation of Healthcare Intangible Assets & Intellectual Property*, ASA HSIG, 2014, at 14.

19) *Ibid.*, at 55.

20) *Ibid.*, at 14.

21) *Ibid.*, at 22.

22) 김용담, 「주식 민법(물권법)」,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199면.

23)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권 기부제도 및 증권화 연구, 2002, 29면.

감가상각의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²⁴⁾ 이에 입법론적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의 지식재산의 개념을 준용함과 동시에 무형자산과 구분하여 입법해야 할 것이다.

Ⅲ.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검토

1.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개인이 소득을 얻는다면 당연히 과세대상이다. 특히, 납세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소득활동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다.²⁵⁾

먼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각종 소득을 창출시키는 것이고, 둘째,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다. 이중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이나 저작권 사용료를 수수하는 것이다.²⁶⁾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권 등의 소유자가 신탁관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 후에 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 뒤 저작권 등의 보유자에게 징수한 사용료에서 수수료를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참고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회사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⁸⁾

한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우이다. 가령,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을 기초로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법인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가치의 측정이 가능한 상표권의 양도와 특허권의 양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²⁹⁾

24) 이영우, 앞의 책, 14-15면.

25)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I(소득세)』, 2013, 22-23면.

26) 예컨대 작곡가들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계약이다.

27) 예컨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자를 대신해 음반사, 음원사이트, 방송사, 공연, 노래방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서 주는 형식이다.

28) 하홍준·박성화·이예진, 『직무발명보상금과 조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3면.

29) 경제장관회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2018, 4면.

2.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 사업소득으로 과세

(1) 지식재산권을 이용케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사업소득을 얻게 된다면 당연히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한 사용료 지급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얻게된 것이든, 그것이 아니라면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업자로부터 얻게 된 이익이더라도 과세대상이다. 이와 같은 사업소득의 과세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때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특허권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에는 거주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³⁰⁾ 행정법원 판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³¹⁾

(2)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가? 지식재산권의 양도행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독자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먼저 전자인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개인의 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인 후자는 개인이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를 통상적인 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도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30)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6 【특허권 등의 대여료의 소득구분】

① 거주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설 2011.3.21>

② 제1항 외의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1.3.21>

31) “대학교수가 여러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강연료 수입을 취득한 경우, 수행한 용역은 우발적·일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성 있는 강연’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상당액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4548 판결.

32)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6 【특허권 등의 대여료의 소득구분】

나. 기타소득으로 과세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정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범위에서 지식재산권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는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가. 원고료, 나. 저작권 사용료인 인쇄(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지식재산권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수령자에 따른 소득의 구분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저작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취급되어, 기타소득은 저작자 외의 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언제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기타소득의 과세원칙이 일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 본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³³⁾

다. 직무발명행위에 대한 과세 여부

(1) 근로소득인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얻게 되는 경우로는 바로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³⁴⁾ 여기서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

33) 강대오 외, 「창작분야 저작권 정보 수집 방안 연구 - 조세 및 저작권 등록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9-10면.

34)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구합3264 판결).

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근로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발명은 근로자의 소유로 된다. 이와 같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선 그동안 사용자주의와 종업원주의가 대립되어 왔다.³⁵⁾ 그러나 관련법 규정으로 종업원주의에 따라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특허를 취득한 당해 발명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³⁶⁾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이에 근로자들의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종업원등이 사용자 등과의 관계상 비독립적 지위에서 제공한 노무의 대가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할 수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사업소득인 경우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여기서 인정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³⁸⁾

35) 사용자주의란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발명이나 저작물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 또는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이며, 종업원주의란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발명 또는 저작물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저작권은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 2015, 162면.

36) 특허청,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연구」, 2015, 7면.

37) 하홍준·박성화·이예진, 앞의 책, 3-4면.

38)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2017, 2-3면.

(3)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³⁹⁾ 또한 기타소득은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한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와 함께 사용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기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가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⁴⁰⁾⁴¹⁾ 이외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인세 과세

가. 지식재산 관련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계산

(1) 법인소득의 과세방법

법인세도 소득세와 유사하게 지식재산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자연인이고,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법적 성격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소득공제, 필요경비 등을 인정하는 등 과세소득에 관한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인적공제를 인정하고 있다.⁴²⁾

39) 지선구,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 15559 판결을 계기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2016, 220-221면.

40)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진다.

1. 0% 또는 실제 경비만 인정 기타소득
2. 2018.03.31. 이전에는 80%, 2018.04.01.~2018.12.31. 70%, 2019.01.01. 이후 60%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3. 80%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4. 80%, 90%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5. 80~20%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42) 전병목·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25-26면.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는 소득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법인소득으로 구성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 이외에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경우도 기업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발생된 수입은 이익금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2) 과세대상인 법인소득의 개념

법인세의 과세물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이때 소득은 회계이론상의 이익을 토대로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이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여기서 이익금의 개념은 자본 그리고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즉, 익금불산입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즉, 손금불산입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여기서 『법인세법』에서의 이익금이란 기업의 회계기준에서의 수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의 손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비용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3) 법인소득금액의 계산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들 전부 이익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손금)의 계산은 연구비,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지식재산권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비용은 한 번에 비용으로 산입되거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비용으로 산입되는지 여부와 일정 기간을 두고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익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기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3) 하홍준, 앞의 논문, 93면.

44) 기획재정부, 『새로 쓴 법인세법 개정조문 연구』, 2016, 25면.

나. 「법인세법」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가상각 규정

(1) 「법인세법」상 지식재산권 관련 감가상각 규정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한 무형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을 영으로 하고 각 무형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⁵⁾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2호 가목, 나목을 참조).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선 감가상각의 방법 중 정액법만이 적용된다.⁴⁶⁾ 그리고 내용 연수는 특허권의 경우 10년, 나머지 지식재산권은 각 5년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2)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대한 규정

한편 개발비는 20년 이내에서 내용연수의 선택이 가능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개발비의 개념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3) 소결

구체적으로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발비의 요건에 맞더라도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개발비 상각은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의 계산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⁴⁷⁾ 그러나 지식재산권 자체는 아니고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자산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5) 김도희, “무형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상장』 2013년 5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4—95면.

46) 정액법이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수·정희선·조진권, 『주요국의 감가상각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10면.

47) 안종석,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64면.

IV.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정립

1. 지식재산권 과세방안 정립의 필요성

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대두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술과 지식의 융합은 물론 많은 지식재산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들의 융합과 개방형 혁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익공유, 저작권과 지식재산권간의 연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⁴⁸⁾

특히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위한 지원제도와 함께 과세방안의 정립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 연구 및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과 동시에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⁴⁹⁾

나. 현행 세법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세지원

현행 세법은 기업이 자체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세액 100% 감면을, 이전시에 100분의 50, 대여 시에 100분의 25를 감면 받으며, 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체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한편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때에는 실제 필요경비가 양도금액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더라도 100분의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혜택도 있다. 물론 실제 필요경비가 양도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⁵⁰⁾

또한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 할 때, 이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저율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허권 등을 얻기 위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⁵¹⁾

4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략』, 2017, 11면.

4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도 정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2018, 3-5면.

50) 김종옥, “2018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및 배경 및 주요 내용”, 『월간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51면.

51) 김종옥, “상계 논문”, 51면.

2. 합리적인 소득세 관련 과세방안의 정립

소득세와 관련한 과세방안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다.

가. 과세관청 입장의 과세방안

먼저 과세관청 입장의 과세방안이다. 만일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의 비율로 필요경비를 공제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이라면 이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 이같이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과 합하여 계산되므로 필요경비가 올바르게 공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이점을 부여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기타소득으로서 혜택을 받았던 개인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

사업자인 개인이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기타소득과 동일하게 필요경비를 상당한 비율로 인정해 준다. 이와 같이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필요경비를 동일하게 해주는 것은 저작권자와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나. 지식재산권 소유자 입장의 과세방안

다음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입장이다. 현재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업을 홀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주체들과의 형평에 맞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때에는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통상적인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⁵²⁾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특유의 성격상 유사한 매매거래를 발견하기

52) 유효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6권 제4집, 한국조세

힘들다. 현행 조세법은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하고, 감정가가 없으면 현금흐름에 따라 보충적 평가금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평가한 금액은 과세관청이 인정해야 확정된다. 만약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평가한 시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가의 양도나 저가의 양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때 소득분류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내국인에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그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최소 필요경비율이 60%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 또한 지식재산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3. 합리적인 법인세 관련 과세방안의 정립

지식재산권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의 과세방안으로는 아래의 네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 지식재산권의 평가문제

기업의 임직원이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 할 때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입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지식재산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그러나 그 임직원이 지식재산권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현물출자 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을 받아 시가미달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시에도 시가평가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감가상각 규정의 보완

현재 지식재산권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규정은 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기타 무형자산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감가상각 규정에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조세지원의 확대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산업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연구하기 위한 R&D 활동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 AMT)에 관한 규정 때문에 세액공제를 올바르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⁵³⁾ 그리고 이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세액공제제도의 효과가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⁵⁴⁾

라. 영업권 양도시에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의 구분 표시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대가에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권과 지식재산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도로 사용료를 받는 상표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 취급된다. 결국 상표권 등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표 1〉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정립 방안

소득세 관련		법인세 관련	
당사자	개선방안	쟁점	개선방안
과세관청	지식재산권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 필요	지식재산권의 평가문제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 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 방지
지식재산권 소유자	사업을 홀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 필요	감가상각 규정의 보완	감가상각 규정에 지식재산권 포함 개정
		조세지원의 확대	특정 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 고려
		영업권 양도시에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의 구분 표시	상표권 등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 필요

53) 노민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7, 16면.

5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부분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공제된다.

V. 결 론

ICT와 융합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인 다품종 대량생산이라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식, 노하우 등으로 산업의 투자 흐름이 변경되면서 그만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전과 투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창출되고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한 주요 국가 및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세법에서 지식재산의 정의 규정을 입법하여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을 통해 얻게되는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의 과세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사업자인지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소득세의 합리적인 과세방안은 과세권자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인 개인이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기타소득과 동일하게 필요경비를 상당한 비율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물론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는 사업을 홀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세 과세는 이익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계산의 기초가 된다. 이에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모두 익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손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연구비, 개발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을 구별하여 이익의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하여, 지식재산권을 연구하기 위한 R&D 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확대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대오 외. 2012. 「창작분야 저작권 정보 수집 방안 연구 - 조세 및 저작권 등록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 경제장관회의. 2018.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2018년도 정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 _____.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략」.
-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I(소득세)」.
- 기획재정부. 2010. 「K-IFRS 도입에 따른 세법상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개선안 연구」.
- _____. 2016. 「새로 쓴 법인세법 개정조문 연구」.
- _____. 2017.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2-3면.
- 김도희. 2013. “무형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13년 5월호 : 90-95.
- 김용담. 2011. 「주식 민법(물권법)」.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종옥. 2018. 「2018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및 배경 및 주요 내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김진수·정희선·조진권. 2009. 「주요국의 감가상각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노민선. 2017.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송영식·이상정. 2015. 「저작권법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
- 심태섭. 2009.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안종석. 2012.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유호림·안창남. 2016.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16(4) : 253-285.
- 이영우. 2014. 「감가상각실무」. 영화조세통람.
- 전병목·안종석. 200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지선구. 2016.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계기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 219-226
- 특허청. 2015.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연구」.
- 하홍준·박성화·이예진. 2018. 「직무발명보상금과 조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발명진흥회. 2002. 특허권 기부제도 및 증권화 연구. 29면.
- Gordon V. Smith and Russell L. Parr. 2000.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Third Edition, Hoboken, NJ : John Wiley & Sons Inc.
- Jonathan Schwartz. 2004. *Will Mickey Be Property of Disney Forever? Divergent Attitudes Toward Patent and Copyright Extensions in Light of Eldred v. Ashcroft*, 2004 U. ILL. J.L.TECH.& POL'Y 105.
- Klaus Schwab.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EF.
- Raymond D. Rath, Robert James Cimasi. 2014. *Valuation of Healthcare Intangible Assets & Intellectual Property*, ASA HSIG.

A Study of Taxation Propos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nsaction

Junghwa Suh*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investment of ICT has emerged as a topic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P) of new technology has become naturally important. In line with these new paradigms, taxation schemes have also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Generally, corporate assets were buildings, land, etc. S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ich is an intangible asset, did not receive high praise. Today, however,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held by companies has increased, and in some areas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has become higher than that of tangible assets.

Thus, the asset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 and the tax revenue that can be generated by this is also increasing. In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Tax Agency, it is necessary to tax income on intellectual property. The proposed taxation related to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o secure the country's finances as the population ages and population declines.

It is assumed that the tax law for the rational tax judg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quir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come taxation can be levied on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depending on whether the ow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a business or non-business. The taxation of income in the position of the taxing agency, must be taxed on the transferred income when transfer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the ow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a sole proprietor, tax benefits should be granted.

The taxation of corporation is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income deducted from profits. Income deriv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herefore a loss. However,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profit by distinguishing intangible assets such as research expenses in relation to the calculation of the loss. And tax support for R & D to stud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ey words〉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tax, corporate income, business income, other income, tax benefit

* Lecturer,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Ph. D. School of Business, suzukiyu81@yonsei.ac.kr